<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한 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경우[1)]
- PDF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회사 e-mail로 제공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검색 후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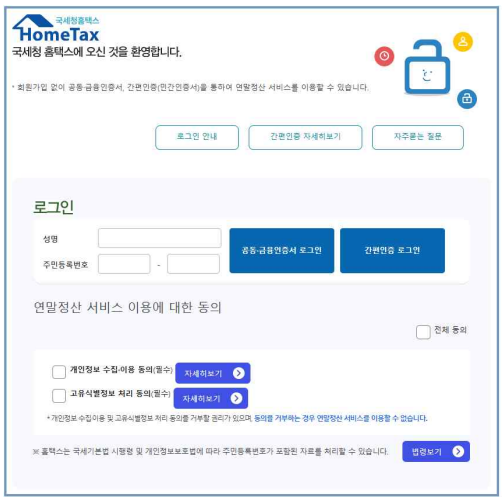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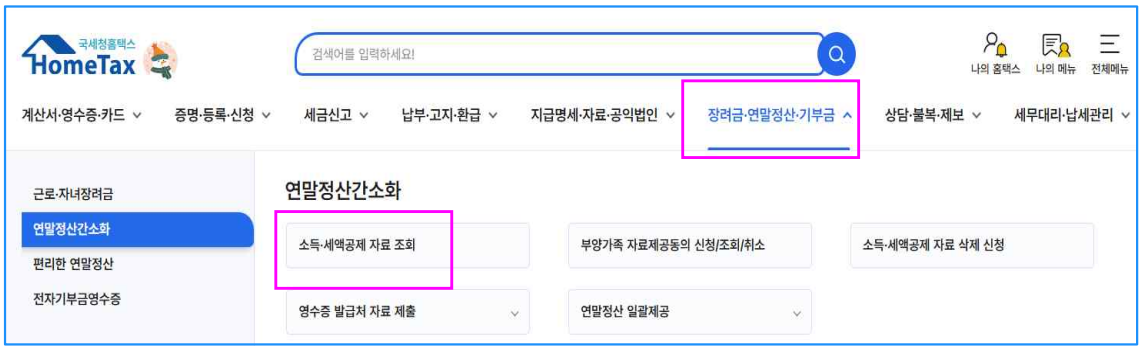

1) 2025년 귀속 간편제출방식은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2024년 귀속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참고바람

⑵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 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전체 월 선택’을 클릭하고, 연도중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로부터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각각 선택한 다음 각 항목의 지출금액을 조회하여 지출금액을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니 1월 20일부터 조회하여 제출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하기와 부양가족 서류 제출>

①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 동의부터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서류도 함께 출력이 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부양가족 자료제공’→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받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서 주민번호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②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작년까지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 2006년과 2006년 이전 출생자)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성년인 경우라면 해당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 2025.1.1.~3.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5.7.15.~12.31.까지 B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실무상 7월분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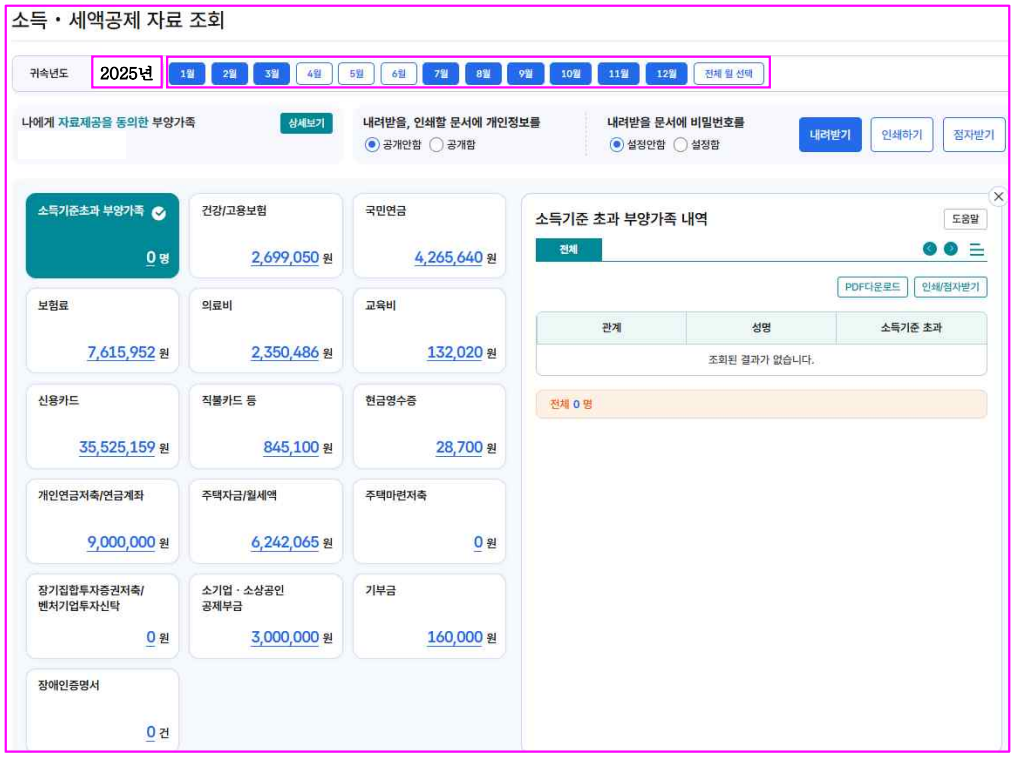

(3)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한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자료를 회사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면 되고 다운로드 시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전호를' → '설정안함'으로 선택 후 다운로드 하길 바라며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는 '공개안함' 또는 '공개함'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실무상 무방하다.
조회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귀속연도 2025년 선택 후 '전체 월 선택' 또는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던 월 선택'

㉡ 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

㉢ 조회한 항목 '내려받기' 클릭

㉣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PDF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저장한 후 이메일 등으로 자료 제공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도중에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과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선택한 후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출력)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⑷ 참고로 다른 직장에서 이직하신 근로자분께서는 다른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근무지에서 수령하셔서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